
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제안이유

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,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나.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(안 별지 제27호의2서식)
 - 1)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
 - 2)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7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

[별지 제27호의2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

사건명(사건번호)	
청 구 인	생년월일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)
	주소
	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)

본인은 위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행정심판위원회 귀중

신청인	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	수수료 없음
첨부서류	제3호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5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 제1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2호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4호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6호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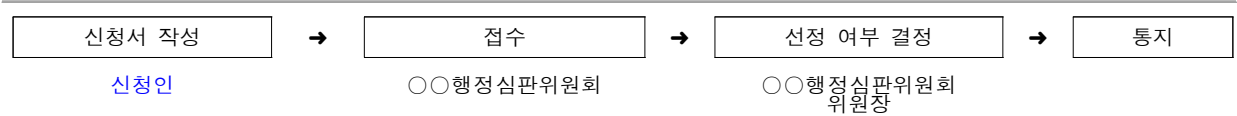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해당분야 표시)

- [] 제1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
- [] 제2호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
- [] 제4호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
- [] 제6호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영</u> <u>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</u> <u>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「전자정</u> <u>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</u> <u>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</u> <u>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</u> <u>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</u> <u>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</u> <u>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</u> <u>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</u> <u>한다.</u>